

“Self Tax Refund” 서비스 이용약관

(Terms and Conditions for “Self Tax Refund” Service)

제 1 조 (목적 및 적용 범위)

본 이용약관(이하 “본 약관”)은 GLORY 주식회사(이하 “당사”)가 자금이동업자(이하 “위탁자”)로부터 위탁을 받아 제공하는 “Self Tax Refund” 서비스(이하 “본 서비스”)의 이용 조건을 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본 서비스를 이용하는 자(이하 “이용자”)는 본 약관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제 2 조 (서비스 내용)

1. 당사는 위탁자인 자금이동업자로부터 업무를 위탁받아, 면세 구매 시 지불한 소비세의 환급 절차를 셀프 환급기 또는 기타 방법으로 제공합니다.
2. 환급 자금의 관리 및 환급 금액의 결정은 위탁자가 수행하며, 당사는 위탁자의 지시에 따라 환급을 실시합니다.
3. 위탁자는 승인송수신사업자와 연계하여 면세 구매 기록 및 세관 판정 정보를 관리하고 이를 당사에 제공합니다.

제 3 조 (정의)

본 약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당사”라 함은 위탁자로부터 업무를 위탁받아 본 서비스를 운영하는 GLORY 주식회사를 말합니다.
2. “위탁자”라 함은 자금결제에 관한 법률(2009 년 법률 제 59 호)(이하 “자금결제법”) 제 37 조에 따라 자금이동업자로 등록된 사업자로서, 환급 자금의 관리 및 환급 금액의 결정을 수행하는 동시에 승인송수신사업자와 연계하여 면세 구매 기록 및 세관 판정 정보를 관리하고, 이러한 정보를 당사에 제공하는 사업자를 말합니다.
3. “본 서비스”라 함은 면세 구매 시 지불한 소비세를 환급하는 메커니즘으로, 셀프 환급기 등을 통해 제공되는 “Self Tax Refund” 서비스를 말합니다.
4. “셀프 환급기”라 함은 이용자가 여권 정보를 판독하여 환급 절차를 진행할 수 있도록 설치된 자동화 기기를 말합니다.
5. “이용자”라 함은 본 서비스를 이용하는 면세 구매 대상자를 말합니다.
6. “면세 구매 대상자”라 함은 일본 소비세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일본 국내에서 면세 구매가 허용되는 비거주자를 말합니다.
7. “승인송수신사업자”라 함은 소비세법 시행령 제 18 조의 4 제 1 항에 따른 승인을 받은 사업자로서, 면세 구매 기록 및 세관 판정 정보를 관리하고 이러한 정보를 위탁자에게 제공하는 사업자를 말합니다.

8. “면세점”이라 함은 관련 법령에 따라 세무서장의 허가를 받은 수출물품 판매장을 말합니다.

제 4 조 (이용 대상자)

이용자는 다음 각 호의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1. 면세 구매 대상자일 것.
2. 일본 국내 면세점에서 면세 구매를 완료했을 것.
3. 위탁자 또는 승인송수신사업자가 관리하는 유효한 면세 구매 기록이 존재하고 세관 판정이 완료되었을 것.
4. 유효한 여권을 제시할 수 있을 것.
5. 신청 시점이 면세 구매일의 익일부터 기산하여 90 일 이내일 것.

제 5 조 (수집 및 이용 정보)

당사는 위탁자의 지시에 따라 본 서비스 제공에 필요한 범위 내에서 다음 정보를 수집 및 이용합니다.

1. 여권에 기재된 개인정보(여권번호는 해시 처리하여 보관합니다).
2. 위탁자 및 승인송수신사업자로부터 제공받은 면세 구매 기록 및 세관 판정 정보.
3. 환급 처리와 관련된 거래 내역(조작 정보 및 출금 정보 포함).
4. 문의 대응에 필요한 이메일 주소 및 연락처 정보.

제 6 조 (정보의 이용 목적)

당사는 수집한 정보를 다음 목적을 위해 이용합니다.

1. 위탁자의 지시에 따른 환급 처리의 실시.
2. 문의 대응 업무.

제 7 조 (환급 방법 및 단위)

1. 환급은 원칙적으로 셀프 환급기 또는 위탁자가 지정하는 방법으로 이루어집니다.
2. 실제 환급 금액은 제 8 조에서 정한 수수료를 공제한 후의 금액으로 합니다.
3. 전항에서 정한 금액에 100 엔 미만의 끝수가 발생하는 경우, 해당 끝수를 절사한 금액을 환급합니다.
4. 현금 환급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위탁자가 지정하는 대체 수단으로 환급됩니다.

제 8 조 (수수료)

1. 본 서비스 이용 시 위탁자가 정하는 수수료 외에, 셀프 환급기 이용 및 본 서비스 제공에 부수하여 발생하는 수수료(이하 통칭하여 "수수료")가 발생합니다. 수수료는 면세점이 부담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이용자에게 환급할 때 공제합니다.
2. 수수료는 면세 구매에 관한 세전 구매가격의 1.1% 상당액(세금 포함) 또는 위탁자가 정하는 수수료를 공제한 후의 환급액에 당사가 지정하는 비율을 곱하여 산정한 금액으로 합니다. 이용자는 본 약관에 동의함으로써 해당 수수료의 산정 방법, 제 1 항에서 정한 공제 방법 및 제 7 조 제 3 항에서 정한 끝수 절사에 동의하는 것으로 합니다.

제 9 조 (면책 사항)

1. 셀프 환급기에서 현금 출금이 완료됨으로써 본 서비스는 종료됩니다. 출금 완료 후 현금의 수령, 보관 및 관리에 대해서 당사는 일체의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2. 당사는 위탁자 또는 승인송수신사업자로부터 제공되는 면세 구매 기록, 세관 판정 정보 및 기타 정보를 바탕으로 본 서비스를 제공하며, 해당 정보의 정확성, 완전성 및 최신성을 보증하지 않습니다.
3. 환급 금액, 환급 가능 여부 및 기타 환급에 관한 판단은 위탁자가 하며, 당사는 위탁자의 지시에 따라 환급 처리를 합니다.
4. 당사는 통신 회선, 시스템 장애, 기기 고장, 위탁자 또는 승인송수신사업자의 시스템 장애 및 기타 당사의 책임으로 돌릴 수 없는 사유로 본 서비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이용하지 못한 것에 대해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5. 당사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한 경우를 제외하고, 당사는 본 서비스의 이용 또는 이용 불능과 관련하여 이용자에게 발생한 손해에 대해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제 10 조 (금지 행위)

이용자는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해서는 안 됩니다.

이용자가 다음 행위 중 하나라도 해당할 경우, 당사는 서비스 이용 정지, 손해배상 청구 및 기타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1. 타인 명의의 여권 사용 또는 허위 신고.
2. 면세 제도의 부정 이용 또는 기타 부정 행위.
3. 설비의 파손, 변조 또는 부정한 조작.
4. 당사 또는 위탁자의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

제 11 조 (약관의 변경)

당사는 필요에 따라 본 약관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변경된 약관은 서비스 이용 시 화면에 표시됩니다.

제 12 조 (준거법, 언어 및 관할 법원)

1. 본 약관의 해석 및 적용은 일본국 법령을 준거법으로 합니다.
2. 본 약관의 원문은 일본어입니다. 타 언어 번역본은 참고용으로 제공되며, 해석상 차이가 있을 경우 일본어판이 우선합니다.
3. 본 약관과 관련하여 분쟁이 발생할 경우, 도쿄지방법원을 제 1 심의 전속적 합의 관할 법원으로 합니다.

부칙

본 약관은 2026 년 11 월 1 일부터 시행합니다.

참고: 본 이용약관은 인공지능(AI)을 통해 번역되었으며, 일본어 버전이 공식 원본입니다. 번역 내용과 일본어 원본 사이에 차이가 있을 경우, 일본어 버전이 우선합니다.